### [서식 예]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(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)



# 소 장

원 고 ㅇㅇ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###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

### 청 구 취 지

- 1. 피고와 소외 ◈◆◈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○○. ○○. ○.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- 2.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○○지방법원 ○○등기소 20○○. ○○. ○○. 접수 제○○○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3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# 청 구 원 인

- 1. 소외 ◆◆◆는 20○○. ○. ○. 원고로부터 금 50,000,000원을 이자 월 2%, 변제 기 20○○. ○. ○○.로 차용하였는데, 변제기 지난 지금까지 위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.
- 2. 그런데 소외 ◈◆◆는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갚지 못하자 원고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처남인 피고와 통모하여 매매를 가장하여 피고에게 20○○. ○○. 매매를 원인으로 ○○법원 ○○등기소 20○○. ○○. ○○. 접수 제○○○

호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.

- 3. 그러나 피고는 30세의 미혼자로서 수년간 일정한 직업을 가지지 못하여 특출한 수입이 없는 사람이고 생활비조차 부모에게서 타서 생활하는 사람이므로,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할 돈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.
- 4. 그렇다면 소외 ◈◆◆와 피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허위·통모의 법률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임을 면하기 어렵고,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해의 의사로써 위와 같은 허위·통모의 법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
- 5. 그러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.

## 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

1. 갑 제2호증

1. 갑 제3호증

1. 갑 제4호증

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

토지대장등본

건축물대장등본

차용증

## 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

1. 소장부본

1. 송달료납부서

각 1통

1통

1통

 2000.
 0.
 0.

 위 원고
 000
 (서명 또는 날인)



## 부동산의 표시

1동의 건물의 표시

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ㅇ아파트 제5동

[도로명주소]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

전유부분의 건물표시

건물의 번호 : 5 - 2- 205

구 조: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슬래브지붕

면 적: 2층 205호 84.87 m²

대지권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

대 9,355m²

대지권의 종류 : 소유권

대지권의 비율 : 935500분의 7652. 끝.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제척기간	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\(\begin{align*}{c} \\ \\ \\ \\ \\ \\ \\ \\ \\ \\ \\ \\ \\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불복절차 및 기 간	<ul> <li>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</li> <li>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 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</li> </ul>
비 용	・인지액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2)참조 ・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기타	<ul> <li>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.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(민법제406조 제1항).</li> <li>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되고,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임(대법원 1998. 2. 27. 선고 97다50985 판결).</li> <li>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,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음(대법원 1991. 8. 13. 선고 91다13717 판결).</li> <li>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고,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가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고,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하여진 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의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음(대법원 2001. 9. 4. 선고 2001다14108 판결).</li> </ul>		

#### 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협조할 의무의 이행지는 성질상 등기지의 특별재판적에 관한 현행 민사소송법 제21조에 규정된 「등기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」이라고 할 것이므로,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무의 이행지는 그

등기관서 소재지라고 볼 것이지, 원고의 주소지를 그 의무이행지로 볼 없음(대법원 2002. 5. 10. 선고 2002마1156 결정).

4.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위 부동산의 관할등기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#### ※ (2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확인 및 형성의 소